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9조제2항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178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구분하며,”를 “경우 :”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각 위반행위의 동기·경위·태양·기간

제38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부과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혐의(증권선물위원회에 위반자의 자진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 일체를 포함한다)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가 된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기소중지 등 수사·

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88조의3 및 제38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8조의3(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442조의2에 따른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23과 같다.

제389조의2(감면되는 자의 범위 및 감면 기준·정도 등) ①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감경·면제되는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2.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단독행위의 경우 제3호 요건은 제외한다),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자가 다음 각 호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자진신고등 당시 해당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
2.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 및 증권선물위원회에서의 수사, 조사, 심의·의결 및 그밖에 이에 부수하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3. 2인 이상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입증에 기여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③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자가 그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1.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감면 기준 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3]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제388조의3 관련)

1. 법 제442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한다.

1) 총수입은 위반행위가 개시된 시점부터 위반행위 효과가 직접 반영되는 기간의 종료 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 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금융투자상품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회피한 손실액,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2)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양도소득세, 신용거래이자비용, 미실현이익 관련 제반 비용 등은 제외)을 말한다.

3) 유상증자 등 권리락·배당락으로 인한 시세변동분과 종합·업종지수상승률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되는 거래 등은 파생상품 거래,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시세조종 등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된 대상을 말한다.

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수 개의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 행위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합산하여 부당이득액으로 본다.

라.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법인 등에게 발생한 이득액을 합산하여 부당이득액으로 본다.

마. 수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공범에게 발생한 이득액 전체를 합산하여 부당이득액으로 본다.

2. 1.에 따라 산정된 부당이득액에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과 제3의 요인에 의한 부분이 결합된 경우 이를 고려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부당이득액 산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한다.

가.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변동과 제3의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한 방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1) 제3의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변동을 완전히 상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의 요인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2) 제3의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변동을 능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의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변동분은 1/3만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3) 제3의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의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변동분은 1/2만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4) 제3의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변동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의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변동분은 2/3만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가 제3의 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을 예견하거나 이용한 경우, 그 전체를 부당이득액으로 본다.

다. 제3의 요인이란 제3자의 개입이나 이에 준하는 외부적 요인을 말하며, 막연한 소문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요인은 제외한다.

3. 위반행위 각 유형별 부당이득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173조의2제2항 및 제174조의 위반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1) 실현이익

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개시 시점부터 정보공개 후 최초로 형성되는 최고 종가(이하 “최초형성최고종가”라 한다)가 발생한 날(이하 “최초형성최고종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도한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실현이익은 가중평균 매수단가와 가중평균 매도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매매일치수량이란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작은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미실현이익

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개시 시점부터 최초형성최고종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처분하지 않은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미실현이익은 최초형성최고종가를 매도단

가로 간주하여 매수단가와 매도단가의 차액에 잔여수량(최초형성최고종가일에 보유 중인 수량을 의미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3) 회피손실

가) 회피손실은 매도단가와 정보공개 후 최초로 형성되는 최저 종가(이하 “최초형성최저종가”라 한다)와의 차액에 매도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최저종가일 전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최초형성최저종가와 매매거래 정지일의 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거래 정지로 상장폐지가 된 경우에는 0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법 제176조의 위반행위(시세조종행위)

1)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가) 시세조종행위 개시 시점부터 시세조종행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시세조종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실현이익은 가중평균 매수단가와 가중평균 매도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매수단가는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

a. 시세조종행위 개시일 전부터 시세조종행위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 시세조종행위 개시일 전일의 종가

b.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보유하게 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와 시세조종행위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매입하는 등 시세조종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 실제 매수단가

나) 시세조종기간 중 처분하지 않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미실현이익은 시세조종행위 종료일의 종가를 매도단가로 간주하여, 매수단가와 매도단가의 차액에 잔여수량(시세조종행위 종료일에 보유 중인 수량을 의미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매수단가의 산정은 가)를 준용한다.

다) 시세조종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의 경우, 시세조종행위 개시일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회피손실)

가)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 시세조종기간 중 최저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그 외의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식은 1)을 준용할 수 있다.

3) 시세의 하락을 유도한 경우

가) 시세의 하락을 유도한 경우, 시세조종행위 개시일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그 외의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식은 1)을 준용할 수 있다.

다. 법 제178조의 위반행위(부정거래행위)

1) 부정거래행위와 관련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이하 “관련 거래”라 한다)가 발행 거래인 경우, 2.의 가.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액으로 본다.

2) 관련 거래가 유통 거래인 경우이거나 1)의 발행 거래에 있어서 시세의 변동 또는 방어를 목적으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가. 또는 나.를 준용할 수 있다.

3) 2)에 따라 나.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거래가 비상장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인 경우에는 매수단가를 아래의 기준으로 정한다.

가) 직전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 해당 사례의 거래단가

나) 직전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비상장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액면금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방식에 따른 비상장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평가금액 중 높은 금액

라. 법 제178조의2의 위반행위(시장질서교란행위)

1) 법 제178조의2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가.에 따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법 제178조의2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나. 또는 다.에 따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마. 법 제180조의 위반행위(공매도 제한)

1) 실현이익

가) 공매도 주문 시점부터 결제일 이후 최초로 형성되는 최저 종가(이하 “최초형성최저종가”라 한다)가 발생한 날(이하 “최초형성최저종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

에 매수(취득을 포함하되, 차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상장증권에 대하여, 실현이익은 가중평균 매도단가와 가중평균 매수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공매도수량과 매수수량 중 작은 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장내매수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 종가를 매수단가로 본다.

2) 미실현이익

가) 공매도 주문 시점부터 최초형성최저종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수하지 않은 상장증권에 대하여, 미실현이익은 최초형성최저종가를 매수단가로 간주하여 매도단가와 매수단가의 차액에 잔여수량(공매도수량에서 최초형성최저종가일까지의 매수수량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바. 법 180조의4의 위반행위(모집·매출에 따른 공매도 제한)

- 1) 공매도 단가와 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취득단가의 차액에 공매도 수량과 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취득수량 중 작은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2) 유상증자 공시 다음날부터 모집(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주식발행가격 결정기간,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 2회 이상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수량으로 가중평균한 공매도 단가를 활용한다.
- 3) 취득단가는 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의한 공시에 따라 결정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으로 산정하며, 신주인수권증서 매입 등 거래비용은 이에 포함한다.
- 4) 공매도 수량은 주식발행가격 결정기간(시행령 제208조의4 제1항) 이내에 공매도한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그 주식수는 제외한다.

4.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의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생 략)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 항 · 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 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 ----- ----- ----- -----.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 준을 따를 것	1. -----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u>경우: 위반 내 용에 대해서는 법 제178조 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구분하며, 위 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 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할 것</u>	다. ----- ----- <u>경우</u>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u>각 위반행위의 동기 · 경</u>

라.·마. (생략)
 1의2. 삭제
 2.·3. (생략)
 ③ ~ ⑥ (생략)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② (생략)
<신설>

위·태양·기간
 라.·마.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
금부과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
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
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법 제429조의2
제1항 각 호의 혐의(증권선물
위원회에 위반자의 자진신고
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 일체
를 포함한다)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가
된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
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원회

<신 설>

가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처
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과징
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
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
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총장
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
다.

제388조의3(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442조의2에 따른 “제429조
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
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
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
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실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
득”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
표23과 같다.

<신 설>

제389조의2(감면되는 자의 범위

및 감면 기준·정도 등) ① 법 제
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
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이
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48
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감
경·면제되는 경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2.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단독행위의 경우 제3호 요건은 제외한다),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자가 다음 각 호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자진신고등 당시 해당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

2.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 및 증권선물위원회에서의 수사, 조사, 심의·의결 및 그밖에 이에 부수하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3. 2인 이상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입증에 기여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③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자가 그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1.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감면 기준점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